

日本から出国され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

◎ 脱退一時金は、次のすべての条件に該当するとき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国民年金、厚生年金保険又は共済組合の被保険者資格を喪失し、日本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2年以内に請求する必要があります。

- ① 日本国籍を有していない方
 - ② 国民年金の第1号被保険者としての保険料納付済期間の月数と保険料4分の1免除期間の月数の4分の3に相当する月数、保険料半額免除期間の月数の2分の1に相当する月数、及び保険料4分の3免除期間の月数の4分の1に相当する月数とを合算した月数、又は厚生年金保険の被保険者期間の月数が6か月以上ある方
 - ③ 日本に住所を有していない方
- ※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する場合は、転出届の提出をしたとき。⇒P5へ
- ④ 年金(障害手当金を含む)を受ける権利を有したことがない方

提出書類

「脱退一時金請求書(国民年金/厚生年金保険)」

添付書類

- ① パスポート(旅券)の写し(氏名、生年月日、国籍、署名、在留資格が確認できるページ)
 - ② パスポート(旅券)の写し(最後に日本を出国した年月日が確認できるページ)
 - ③ 「銀行名」、「支店名」、「支店の所在地」、「口座番号」及び「請求者本人の口座名義」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書類(銀行が発行した証明書等。または、「銀行の口座証明印」の欄に銀行の証明を受けてください。)
 - ④ 国民年金手帳、その他基礎年金番号が確認できる書類
- ◎ なお、帰国前に日本国内から請求書を提出される場合には、上記②の代わりに日本国外に転出予定である旨が記載された住民票の写しや住民票の除票等、市区町村に転出届を提出したことを確認できる書類を添付し、住民票の転出(予定)日以降に日本年金機構へ提出してください。

※脱退一時金の受給要件として、日本年金機構が請求書を受理した日に日本に住所を有していないことが必要です。

《注意》⇒次ページへ

年金制度に6ヶ月以上加入されていた方は、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が、脱退一時金を受け取った場合の注意点がございますので、次ページの注意書きをよくご覧になり、将来的な年金受給を考慮したうえで、脱退一時金の請求についてご検討ください。

Japan Pension Service



<http://www.nenkin.go.jp/>

脱退一時金を受け取った場合、脱退一時金の計算の基礎となった期間は、日本の年金制度に加入していた期間(以下「加入期間」という。)ではなくなります。以下の注意書きをよくご覧になり、将来的な年金受給を考慮したうえで、脱退一時金の請求についてご検討ください。

① 老齢年金の資格期間が 10 年に短縮

(2017 年 8 月より、25 年から 10 年に短縮)

年金受け取りに必要な資格期間が 10 年 (120 月) 以上あると、日本の老齢年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資格期間」とは？

- ◎国民年金の保険料を納めた期間や免除された期間
- ◎厚生年金保険や共済組合等の加入期間
- ◎日本の年金制度に加入していなくても資格期間に加えることができる期間 (合算対象期間)

※資格期間が 10 年 (120 月) 以上ある方は、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せん。

※合算対象期間は、過去に日本の年金制度に加入していなかった場合などでも、資格期間に含むことができる期間です。(ただし、年金額の算定には反映されません)

例えば、日本で永住許可を得た外国籍の方については、海外在住期間のうち、1961 年 4 月から永住許可を取得するまでの期間 (20 歳以上 60 歳未満の期間に限る) が合算対象期間となります。

その他、詳細については年金事務所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② 加入期間の通算

日本と年金通算の協定を締結している相手国の年金制度に加入していた期間のある方は、一定の要件のもと加入期間を通算して、日本及び協定相手国の年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

◎ただし、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と、脱退一時金の計算の基礎となった期間は通算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年金通算の社会保障協定を締結している相手国 (2017 年 8 月現在)

ドイツ、アメリカ、ベルギー、フランス、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オランダ、チェコ、スペイン、アイルランド、ブラジル、スイス、ハンガリー、インド、ルクセンブルク

③ 支給額計算の上限

脱退一時金の支給金額は、日本の年金制度に加入していた月数に応じて、36 ヶ月を上限として計算されます。(長期間 (37 ヶ月以上) 日本の年金制度に加入されていた方が脱退一時金を請求した場合、脱退一時金の支給金額は 36 ヶ月を上限として計算されますが、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以前の全ての期間が年金加入期間ではなくなります。)

* 脱退一時金にかかる税金について

国民年金の脱退一時金は、所得税が源泉徴収されませんが、厚生年金保険の脱退一時金は、その支給の際に、20.42%の税金が源泉徴収されます。

非居住者の方が「退職所得の選択課税による還付のための申告書」を税務署に提出することで、源泉徴収された税金の還付を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申告書の提出先は、日本国内における最終の住所地又は居所地を管轄する税務署となります。

申告及び還付金の受け取りのためには、帰国前に、日本国内における最終の住所地又は居所地を管轄する税務署へ「納税管理人届出書」(この様式は、国税庁ホームページ (<http://www.nta.go.jp>) に掲載しています。)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なお、「納税管理人届出書」を提出しないで帰国した場合には、申告時に「納税管理人届出書」を申告書と併せて提出してください。また、納税管理人の資格は、日本に住所地又は居所地を有すること以外に特にありません。(申告などの手続について、ご不明な点は税務署にお尋ねください。)脱退一時金の送金と同時に「脱退一時金支給決定通知書」を送付しますので、原本を納税管理人に送付してください。

* 請求者が脱退一時金の支給を受けずに死亡した場合

請求者の死亡当時生計を同一にしていた配偶者、子、父母、孫、祖父母、兄弟姉妹、その他 3 親等内の親族が代わりに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本人が死亡前に請求書を提出してい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

일본에서 출국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탈퇴일시금은 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는 분
- ② 국민연금의 제 1 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 수와 보험료 4 분의 1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 수, 보험료 반액면제기간의 월 수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 및 보험료 4 분의 3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를 합산한 월 수,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 수가 6 개월 이상인 분
- ③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
 -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로 간주」 를 받고 출국하실 경우는 전출신고를 제출했을 때. → P6 로
- ④ 연금(장애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분

제출 서류

「탈퇴일시금 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첨부서류

- ① 패스포트(여권) 사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② 패스포트(여권) 사본(맨 마지막에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③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 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으십시오.)
- ④ 국민연금수첩 기타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리고, 귀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 청구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상기 ② 대신 일본국 외로 전출할 예정임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이나 주민표의 제표 등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주민표의 전출(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일시금의 수급 요건으로서 일본연금기구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주의》 → 다음 페이지로

연금제도에 6 개월 이상 가입하셨던 분은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탈퇴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사오니 다음 페이지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장래의 연금 수급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탈퇴일시금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탈퇴일시금의 계산 기초가 된 기간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기간(이하 「가입 기간」이라고 함)에서 제외됩니다. 이하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장래의 연금 수급을 고려하신 다음에 탈퇴일시금 청구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노령연금의 자격 기간이 10년으로 단축

(2017년 8월부터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자격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있으면 일본의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기간」이란?

- ◎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면제받은 기간
- ◎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 기간
- ◎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자격 기간에 추가할 수 있는 기간(합산 대상 기간)

※ 자격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있는 분은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합산 대상 기간은 과거에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자격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다만, 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을 갖는 분에 관해서는 해외 체류기간 중 1961년 4월부터 영주허가를 취득했을 때까지의 기간(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에 한함)이 합산 대상 기간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입 기간의 통산

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는 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래 가입 기간을 통산시켜 일본 및 협정 상대국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탈퇴일시금을 받으시면 탈퇴일시금의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은 통산시킬 수 없게 됩니다.

※ 연금 통산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2017년 8월 기준)

-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거리, 인도, 룩셈부르크

③ 지급액 계산의 상한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월 수에 따라 36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장기간(37개월 이상)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분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36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만,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일시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만,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은 지급 시에 20.4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거주자가 아닌 분이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에 의한 환부를 위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의 제출처는 일본 국내에서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신고 및 환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귀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귀국한 경우는 신고 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또한 납세 관리인의 자격은 일본에 주소지 또는 거처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신고 등 수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탈퇴일시금의 송금과 동시에 「탈퇴일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오니 원본을 납세 관리인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자가 탈퇴일시금의 지급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청구자가 사망한 당시에 생계를 함께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및 손녀, 조부모, 형제와 자매, 기타 삼촌간 이내의 친족이 본인 대신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再入国許可及びみなし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される方へ

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される場合でも、市区町村に転出届を提出したときは、脱退一時金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 POI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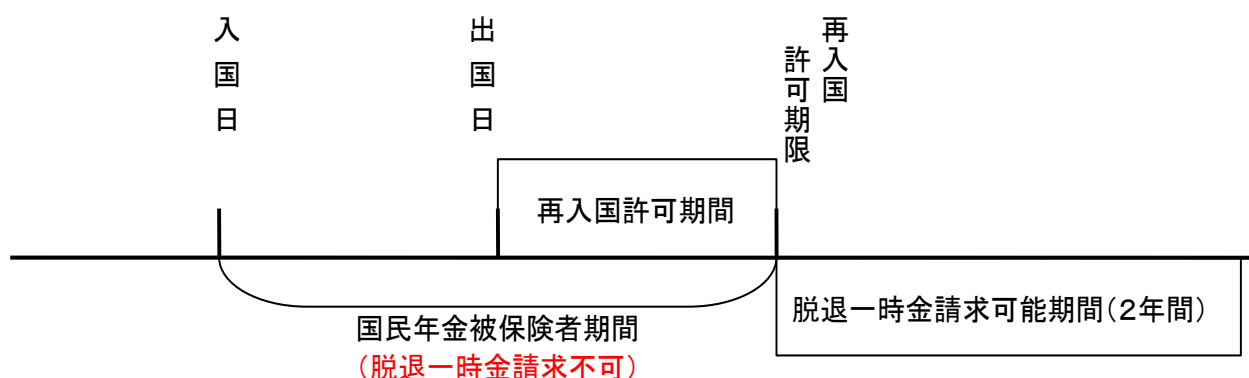
転出届を提出していない場合、再入国許可期間内は、原則として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する方でも、国外へ住所を移す場合には、市区町村へ転出届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市区町村へ転出届を提出したうえで、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している方は、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場合、転出日の翌日(国民年金の資格喪失日)から2年間は脱退一時金の請求可能期間となります。

《転出届を提出せずに出国した場合》

* 再入国許可を受けた方が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までに再入国しなかった場合



原則として、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が経過するまでは国民年金の被保険者とされることから、脱退一時金は請求できません。なお、国民年金の被保険者資格の喪失日(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みなし再入国許可期間)が経過した日)から2年間は脱退一時金の請求可能期間となります。

※再入国許可期限内であっても住民票が消除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脱退一時金請求の[時効起算日](#)についてはご注意ください。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로 간주」를 받고 출국하는 분에게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할 경우에도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OI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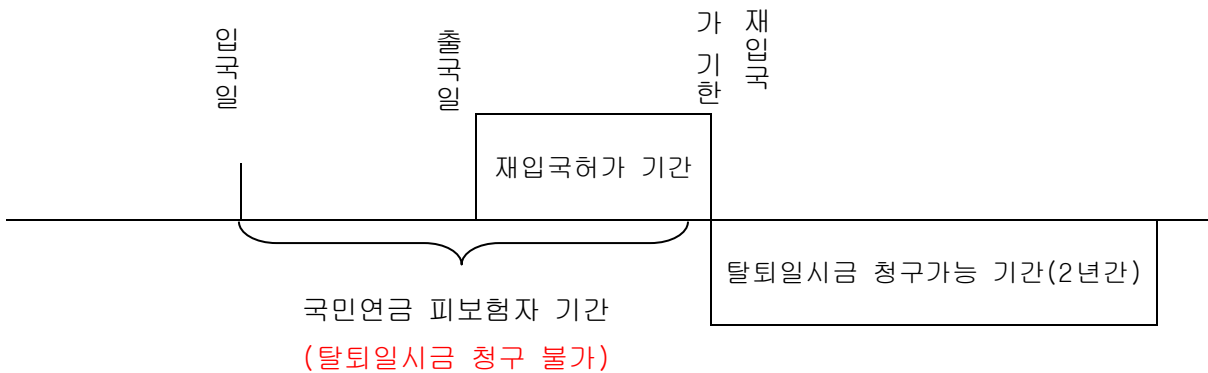
전출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분이라도 국외에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출일의 다음날(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일)부터 2 년간이 탈퇴일시금 청구가능 기간이 됩니다.

《전출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 재입국허가를 받은 분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재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취급되므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재입국허가 간주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 년간이 탈퇴일시금 청구가능 기간입니다.

※재입국허가 기한 내에도 주민표가 삭제될 경우가 있으니 탈퇴일시금 청구의 시효 기산일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外国籍の方が、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後に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1号被保険者としての保険料納付済期間の月数と
 保険料4分の1免除期間の月数の4分の3に相当する月数、
 保険料半額免除期間の月数の2分の1に相当する月数、
 保険料4分の3免除期間の月数の4分の1に相当する月数
 を合計した月数が6か月以上あって、年金等の受給権が発生していない方が対象になります。
 最後に国民年金の被保険者の資格を喪失したとき（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
 2年以内に請求してください。

受給金額

最後に保険料を納付した月により、受給金額は以下のとおりとなります。

- ◇ 最後に保険料を納付した月が平成29年度に属する場合と平成29年3月以前の場合の受給金額は、下記の表のとおりとなります。

対象月数	脱退一時金額					
	平成29年4月から平成30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8年4月から平成29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7年4月から平成28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6年4月から平成27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5年4月から平成26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4年4月から平成25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6月以上12月未満	49,470円	48,780円	46,770円	45,750円	45,120円	44,940円
12月以上18月未満	98,940円	97,560円	93,540円	91,500円	90,240円	89,880円
18月以上24月未満	148,410円	146,340円	140,310円	137,250円	135,360円	134,820円
24月以上30月未満	197,880円	195,120円	187,080円	183,000円	180,480円	179,760円
30月以上36月未満	247,350円	243,900円	233,850円	228,750円	225,600円	224,700円
36月以上	296,820円	292,680円	280,620円	274,500円	270,720円	269,640円

対象月数	脱退一時金額					
	平成23年4月から平成24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2年4月から平成23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1年4月から平成22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20年4月から平成21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19年4月から平成20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平成18年4月から平成19年3月までの間に保険料納付済期間を有する場合の受給金額
6月以上12月未満	45,060円	45,300円	43,980円	43,230円	42,300円	41,580円
12月以上18月未満	90,120円	90,600円	87,960円	86,460円	84,600円	83,160円
18月以上24月未満	135,180円	135,900円	131,940円	129,690円	126,900円	124,740円
24月以上30月未満	180,240円	181,200円	175,920円	172,920円	169,200円	166,320円
30月以上36月未満	225,300円	226,500円	219,900円	216,150円	211,500円	207,900円
36月以上	270,360円	271,800円	263,880円	259,380円	253,800円	249,480円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수급 금액

외국국적인 분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완료 기간의 월 수와
- 보험료 4분의 1 면제기간의 월 수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월 수
- 보험료 반액 면제기간의 월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 수
- 보험료 4분의 3 면제기간의 월 수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월 수

를 합계한 월 수가 6개월 이상이며, 연금 등의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십시오.

수급 금액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 따른 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2017년도에 속하는 경우와 2017년 3월 이전인 경우의 수급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상 월 수	탈퇴일시금액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9,470 엔	48,780 엔	46,770 엔	45,750 엔	45,120 엔	44,940 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98,940 엔	97,560 엔	93,540 엔	91,500 엔	90,240 엔	89,880 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48,410 엔	146,340 엔	140,310 엔	137,250 엔	135,360 엔	134,820 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97,880 엔	195,120 엔	187,080 엔	183,000 엔	180,480 엔	179,760 엔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47,350 엔	243,900 엔	233,850 엔	228,750 엔	225,600 엔	224,700 엔
36개월 이상	296,820 엔	292,680 엔	280,620 엔	274,500 엔	270,720 엔	269,640 엔

대상 월 수	탈퇴일시금액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5,060 엔	45,300 엔	43,980 엔	43,230 엔	42,300 엔	41,580 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90,120 엔	90,600 엔	87,960 엔	86,460 엔	84,600 엔	83,160 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35,180 엔	135,900 엔	131,940 엔	129,690 엔	126,900 엔	124,740 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80,240 엔	181,200 엔	175,920 엔	172,920 엔	169,200 엔	166,320 엔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25,300 엔	226,500 엔	219,900 엔	216,150 엔	211,500 엔	207,900 엔
36개월 이상	270,360 엔	271,800 엔	263,880 엔	259,380 엔	253,800 엔	249,480 엔

外国籍の方が、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後に脱退一時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脱退一時金は厚生年金保険の保険料を6か月以上支払い、年金等の受給権が発生していない方が対象になります。最後に国民年金の被保険者の資格を喪失したとき（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2年以内に請求してください。

受給金額

脱退一時金は、被保険者期間に応じて、以下のとおり計算されます。この給付は、課税の対象となります。（2 ページ目参照）

◇ **計算式**

脱退一時金額 = 平均標準報酬額*** × 支給率*（厚生年金保険の被保険者期間に応じた支給率は次の表のとおりです。）

厚年被保険者期間 月数	最終月が平成21年9月 から平成22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2年9月 から平成23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3年9月 から平成24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4年9月 から平成25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5年9月 から平成26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6年9月 から平成27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7年9月 から平成28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8年9月 から平成29年8月の場 合の率	最終月が平成29年9月 から平成30年8月の場 合の率
6月以上12月未満	0.5	0.5	0.5	0.5	0.5	0.5	0.5	0.5	0.5
12月以上18月未満	0.9	0.9	1	1	1	1	1.1	1.1	1.1
18月以上24月未満	1.4	1.4	1.4	1.5	1.5	1.6	1.6	1.6	1.6
24月以上30月未満	1.8	1.9	1.9	2	2.1	2.1	2.1	2.2	2.2
30月以上36月未満	2.3	2.4	2.4	2.5	2.6	2.6	2.7	2.7	2.7
36月以上	2.8	2.8	2.9	3	3.1	3.1	3.2	3.3	3.3

【参考】平成17年4月以降の厚生年金保険の被保険者期間がある方の計算式について
 脱退一時金額 = 平均標準報酬額***
 × 支給率[(保険料率**** × 1 / 2) × 被保険者期間月数に応じた数**]

**被保険者期間月数に応じた数に
 ついては次のとおりです。

厚年被保険者期間月数	支給率計算に用いる数
6月以上12月未満	6
12月以上18月未満	12
18月以上24月未満	18
24月以上30月未満	24
30月以上36月未満	30
36月以上	36

*****平均標準報酬額**

◇ 厚生年金保険被保険者期間の全部が平成15年4月以後の方

$$\text{平均標準報酬額} = \frac{\text{被保険者期間の各月の標準報酬月額と標準賞与額の合計}}{\text{全被保険者期間の月数}}$$

◇ 厚生年金保険被保険者期間の全部又は一部が平成15年3月以前の方

$$\text{平均標準報酬額} = \frac{\text{平成15年3月以前の被保険者期間の各月の標準報酬月額} \times 1.3 + \text{平成15年4月以後の被保険者期間の各月の標準報酬月額標準賞与額の合計}}{\text{全被保険者期間の月数}}$$

******保険料率**

最終月が1月～8月の場合、前々年10月時点の保険料率になります。
 最終月が9月～12月の場合、前年10月時点の保険料率になります。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수급 금액

외국국적인 분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8 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금 등의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하십시오.

수급 금액

탈퇴일시금은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급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4 페이지를 참조)

계산방식

탈퇴일시금액 = 평균 표준 보수액*** × 지급율*(*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에 따른 지급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최종월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인 경우의 율
6 개월 이상 12 개 월 미만	0.5	0.5	0.5	0.5
12 개월 이상 18 개 월 미만	0.9	0.9	1	1
18 개월 이상 24 개 월 미만	1.4	1.4	1.4	1.5
24 개월 이상 30 개 월 미만	1.8	1.9	1.9	2
30 개월 이상 36 개 월 미만	2.3	2.4	2.4	2.5
36 개월 이상	2.8	2.8	2.9	3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최종월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인 경우의 율
6 개월 이상 12 개 월 미만	0.5	0.5	0.5	0.5
12 개월 이상 18 개 월 미만	1	1	1.1	1.1
18 개월 이상 24 개 월 미만	1.5	1.6	1.6	1.6
24 개월 이상 30 개 월 미만	2.1	2.1	2.1	2.2
30 개월 이상 36 개 월 미만	2.6	2.6	2.7	2.7
36 개월 이상	3.1	3.1	3.2	3.3

【참고】 2005년 4월 이후에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탈퇴일시금액=평균 표준 보수액***

$$\times \text{지급율(보험료율****} \times 1/2) \times \text{피보험자기간 월 수에 따른 값**}$$

**피보험자 기간 월 수에 따른 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지급율의 계산에 사용되는 값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8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24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0
36개월 이상	36

*****평균 표준 보수액**

◇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의 전부가 2003년 4월 이후인 분

$$\text{평균 표준 보수액} = \frac{\text{피보험자 기간의 각 달의 표준 보수 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text{피보험자 기간 전체의 월 수}}$$

◇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03년 3월 이전인 분

$$\text{평균 표준 보수액} = \frac{\begin{matrix} \text{2003년 3월 이전의 피보험자 기간} & + & \text{2003년 4월 이후의 피보험자 기간의 각 달} \\ \text{의 각 달의 표준 보수 월액} \times 1.3 & & \text{의 표준 보수 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 \end{matrix}}{\text{피보험자 기간 전체의 월 수}}$$

******보험료율**

최종월이 1월~8월인 경우 전년 10월 시점의 보험료율이 됩니다.

최종월이 9월~12월인 경우 전년 10월 시점의 보험료율이 됩니다.

탈퇴일시금을 일본국외로 송금할 때 사용하는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脱退一時金を日本国外へ送金する際に使用する通貨は次のとおりです。

Australia	오스트라리아	Australian Dollar	오스트라리아·달러
Austria	오스트리아	Euro	유로
Belgium	벨기에	Euro	유로
Canada	캐나다	Canadian Dollar	캐나다·달러
Cuba	キューバ	Euro	유로
Cyprus	키프로스	Euro	유로
Denmark	덴마크	Danish Krone	덴마크·크로네
Estonia	에스토니아	Euro	유로
Finland	핀란드	Euro	유로
France	프랑스	Euro	유로
Germany	독일	Euro	유로
Greece	그리스	Euro	유로
Iran	이란	(Japanese Yen)*	일본원
Ireland	아일랜드	Euro	유로
Italy	이탈리아	Euro	유로
Latvia	라트비아	Euro	유로
Lithuania	리투아니아	Euro	유로
Luxembourg	룩셈부르크	Euro	유로
Malta	몰타	Euro	유로
Monaco	모나코공국	Euro	유로
Myanmar	미얀마	Japanese Yen**	일본원
Netherlands	네덜란드	Euro	유로
New Zealand	뉴질랜드	New Zealand Dollar	뉴질랜드·달러
Nor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Japanese Yen)*	일본원
Norway	노르웨이	Norwegian Krone	노르웨이·크로네
Portugal	포르투갈	Euro	유로
Singapore	싱가포르	Singapore Dollar	싱가포르·달러
Slovakia	슬로바키아	Euro	유로
Slovenia	슬로베니아	Euro	유로
Spain	스페인	Euro	유로
Sudan	수단	U.K. Pound	잉글랜드·파운드
Sweden	스웨덴	Swedish Krona	스웨덴·크로네
Switzerland	스위스	Swiss Franc	스위스·프랑
United Kingdom	잉글랜드	U.K. Pound	잉글랜드·파운드
상기 이외의 국가	上記以外の国	U.S. Dollar	미국·달러

*일본의 금융기관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日本の金融機関でのみお受け取りいただけます。

**미얀마의 송금 가능 은행은 다음 3 곳입니다. (2017.1 기준)

ミャンマーの送金可能な銀行は以下の3行です。(2017.1 現在)

Myanma Foreign Trade Bank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Co-Operative Bank Ltd.

첨부서류

① ~ ④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添付書類 (①~④の書類等が添付されていない場合は、請求書をお返すこととなりますので添付もれのない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① 패스포트(여권) 사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パスポート(旅券)の写し(氏名、生年月日、国籍、署名、在留資格が確認できるページ)

② 패스포트(여권) 사본(맨 마지막에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パスポート(旅券)の写し(最後に日本を出国した年月日が確認できるページ)

◎그리고, 귀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 청구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상기 ② 대신 일본국 외로 진출할 예정임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이나 주민표의 제표 등 시구정촌에 진출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주민표의 진출(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なお、帰国前に日本国内から請求書を提出される場合には、上記②の代わりに日本国外に転出予定である旨が記載された住民票の写しや住民票の除票等、市区町村に転出届を提出したことを確認できる書類を添付し、住民票の転出(予定)日以降に日本年金機構へ提出してください。

③ 청구서의 「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던지,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한,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수급할 경우에는 계좌명의가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초은행에서는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請求書の「銀行の口座証明印」の欄に銀行の証明を受けるか、「銀行名」、「支店名」、「支店の所在地」「口座番号」及び「請求者本人の口座名義」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書類を添付してください(銀行が発行した証明書等)。なお、日本国内の金融機関で受ける場合は、口座名義がカタカナで登録され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ゆうちょ銀行では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せん。

④ 국민연금수첩 기타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国民年金手帳、その他基礎年金番号が確認できる書類

공적연금제도(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선원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던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公的年金制度(厚生年金保険、国民年金、船員保険、共済組合)に加入していた期間を記入してください。

이력 (공적연금제도 가입 경과) ※가능한 자세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履歴(公的年金制度加入経過) ※できるだけくわしく、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

(1) 사업소(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선원이었을 경우에는 승선한 선박명 (1)事業所(船舶所有者)の名称及び船員であったときはその船舶名	(2) 사업소 (선박소유자)의 소재지 또는 국민연금 가입시의 주소 (2)事業所(船舶所有者)の所在地または国民年金加入時の住所	(3) 근무기간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3)勤務期間または国民年金の加入期間	(4) 가입하였던 연금제도의 종류 (4)加入していた年金制度の種別
		から(부터~) まで(까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 2 厚生年金保険 후생연금보험 3 船員保険 선원보험 4 共済組合 공제조합
		から(부터~) まで(까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 2 厚生年金保険 후생연금보험 3 船員保険 선원보험 4 共済組合 공제조합
		から(부터~) まで(까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 2 厚生年金保険 후생연금보험 3 船員保険 선원보험 4 共済組合 공제조합
		から(부터~) まで(까지~)	1 국민연금 국민연금 2 厚生年金保険 후생연금보험 3 船員保険 선원보험 4 共済組合 공제조합

(주)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은 살고 있던 주소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注) 国民年金に加入していた期間は、住んでいた住所のみを記入してください。

기입상의 주의

청구서의 1~6 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4.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5. 탈퇴일시금 입금구좌」는 알파벳 대문자로 빠짐 없이 기입하여주십시오.
- ② 「6. 연금수첩의 기재사항」의 기초연금번호란에는 연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기초연금번호, 각 제도의기호번호란에는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의 연금수첩 기호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③ 「일본연금기구기입란」은 기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 ④ 「연금수첩의 기초연금번호 및 연금수첩의 기호번호」는 나중에 귀하가 조회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번호를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⑤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4 쪽의 이력란을 기입해 주십시오.

記入上の注意

請求書の1~6については必ず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のない場合は請求書をお返しする場合があります。

- ① 「4.請求者氏名、生年月日及び住所」及び「5.脱退一時金振込先口座」は、アルファベット大文字で記入漏れのないようお願いします。
- ② 「6.年金手帳の記載事項」の基礎年金番号欄には年金手帳に記載されている基礎年金番号、各制度の記号番号欄には今まで加入したことのある年金制度の年金手帳の記号番号を転記してください。
- ③ 「日本年金機構記入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④ 「年金手帳の基礎年金番号及び年金手帳の記号番号」は、後日あなたが照会するときを使用しますので、請求書を提出するときは必ず番号を控えておいてください。
- ⑤ 基礎年金番号がわからない場合は、14 ページの履歴欄を記入してください。

(2017.4)

절취하여 청구서 송부시에 봉투에 붙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切り取って請求書送付時の封筒に貼って使用してください。

(일본 국내에서 송부하실 경우도 송부처는 같습니다.)

(日本国内から送付する場合も送付先は同じです。)

AIR MAIL

Japan Pension Service
 3-5-24, Takaido-nishi, Suginami-Ku,
 Tokyo 168-8505 **JAPAN**
 〒168-8505 東京都杉並区高井戸西 3 丁目 5 番 24 号
 日本年金機構 (外国業務グループ)

TEL. +81 - 3 - 6700 - 1165
 (The telephone service is in Japanese.)